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2012. 9



< 주의 사항 >

- 본 가이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년 2월 17일 일부개정, ’12년 8월 18일 시행, 법률 제11322호)』의 제정 취지 및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이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지도의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본 가이드의 판권은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또한, 가공·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이 가이드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KISA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privacy.kisa.or.kr/알림마당/기업자료실)에 게시됩니다.

목 차

I. 기업과 개인정보보호	1
1.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2
2.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	3
3. 개인정보란?	5
(1) 개인정보의 정의	5
가. 「생존하는 개인」이란?	5
나. 개인에 「관한」정보란?	5
다.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한」정보란?	6
(2)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6
(3) 개인정보의 범위	9
4.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9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0
가. 정의	10
나. 전기통신사업자	10
다. 영리목적의 정보 제공 및 제공 매개자	13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14
(3) 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14
(4) 수탁자에 대한 준용	15
(5) 이용자	16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
(1)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16
(2)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	18
6.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주요 규정	19
II.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획득 의무	25
1.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조치	26
(1) 법 규정 취지	26
(2) 사업자 조치 사항	26
(3) 해설	27
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27

목 차

나. 동의를 얻는 방법	27
다.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	29
(4) 벌칙 및 행정 처벌	31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31
2.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금지	33
(1) 법 규정 취지	33
(2) 사업자 조치 사항	33
(3) 해설	34
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는 경우	34
나.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34
(4) 벌칙 및 행정처벌	35
(4)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36
3.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시 동의 조치	38
(1) 법 규정 취지	39
(2) 사업자 조치 사항	40
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40
나. 개인정보의 취급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41
(3) 해설	44
가.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44
나. 위탁업무의 구분	46
(가) 공개·통지로 처리 가능한 위탁 업무	47
(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위탁 업무	48
다. 재위탁하는 경우	49
라. 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50
(4) 벌칙 및 행정처벌	50
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50
나.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51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51
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51
나.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52

목 차

다. 이용자 대상 고지 및 동의 관련	53
라. 위탁 업무 처리 절차	54
마. 수탁 업체 관리·감독	55
4.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조치 사항	56
(1) 규정 취지	56
(2) 사업자 조치 사항	56
(3) 해설	56
가. 법정대리인	56
나. 법정대리인 동의획득 방법	57
(4) 벌칙 및 행정처벌	59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59
5. 동의 획득 절차	60
(1) 동의 획득 절차	60
(2) 벌칙 및 행정처벌	64
(3)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64
6.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65
(1) 법 규정 취지	65
(2) 사업자 조치 사항	65
(3) 벌칙 및 행정처벌	67
(4)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67
7.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70
(1) 법 규정 취지	70
(2) 사업자 조치 사항	70
(3) 해설	71
가. 민감 정보 수집 제한	71
(가) 민감 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	71
(나) 민감 정보의 종류	71
(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	72
(4) 벌칙 및 행정처벌	72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72

목 차

Ⅲ.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	74
1. 개인정보의 파기	75
(1) 법 규정 취지	75
(2) 사업자 조치 사항	75
(3) 해설	76
가. 개인정보 파기 시점	76
나. 개인정보 파기 방법	77
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관리 방법	78
라. 제3자 및 수탁업체에 제공한 정보 파기	78
(4) 벌칙 및 행정처벌	79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79
2.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80
(1) 법 규정 취지	80
(2) 사업자 조치 사항	81
(3) 해설	81
가. 개인정보 유효기간	81
나. 유효기간(3년)의 예외	81
다. 정보통신서비스 미이용 판단 기준	83
라. 개인정보 파기 및 분리 저장·관리 방법	84
마. 파기 등 조치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	87
바. 유효기간 도래 통지 시기 및 방법	87
사. 연락처 부재·변경·오류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88
(4) 벌칙 및 행정처벌	89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89
3. 이용자 권리 보장	90
(1) 법 규정 취지	91
(2) 사업자 조치 사항	91
(3) 해설	91
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철회권	91

목 차

나. 열람·제공 및 정정 요구권	92
다. 법정대리인의 권리 보장	93
라. 가입 절차보다 쉬운 탈퇴 절차 마련	93
마. 이용자 권리 행사에 대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94
바. 열람 및 정정 요구의 거부	94
(4) 벌칙 및 행정처벌	94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95
4.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98
(1) 법 규정 취지	98
(2) 사업자 조치 사항	99
(3) 해설	99
가. 법 적용 대상	99
나. 통지 대상 정보	99
다. 통지 주기 및 방법	102
(4) 벌칙 및 행정처벌	103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103
5. 개인정보 취급방침 작성	105
(1) 법 규정 취지	106
(2) 사업자 조치 사항	106
(3) 해설	106
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포함 내용	106
나.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107
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108
(4) 벌칙 및 행정처벌	108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108
6. 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110
(1) 법 규정 취지	111
(2) 사업자 조치 사항	111
(3) 해설	111
가. 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누출등)'의 의미	111

목 차

나. 통지 및 신고 시기 및 내용	113
다. 통지 및 신고 방법	114
라.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116
(4) 벌칙 및 행정처벌	116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116
7. 영업 양수·양도 시 조치 사항	120
(1) 법 규정 취지	120
(2) 사업자 조치 사항	121
(3) 해설	121
가. 통지 주체	121
나. 통지 내용	122
다. 통지 방법	122
라. 영업양수자들의 '별도의 동의' 획득 의무 규정	124
(4) 벌칙 및 행정처벌	124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124
8.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126
(1) 법 규정 취지	127
(2) 사업자 조치 사항	128
(3) 해설	128
(4) 벌칙 및 행정처벌	129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130
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33
(1) 법 규정 취지	133
(2) 사업자 조치 사항	134
(3) 해설	134
(4) 벌칙 및 행정처벌	134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135
IV. 정보통신망법 외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사항	136
1. 개요	136
2. CCTV 설치·운영	136

목 차

3.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137
V. 행정 규제 기준	139
1. 과징금	139
(1) 과징금의 의미	139
(2) 과징금 부과 규정	139
(3) 과징금 부과 기준	141
가. 기본 과징금	141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143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기준	144
라. 세부 기준의 마련	145
2. 과태료(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146
3. 정리	147
VI. 정보통신방법	149
VII.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183
VIII.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190
IX.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199

I. 기업과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2.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
3. 개인정보란?
4.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주요 규정

1.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일상생활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거쳐, 스마트폰 등 각종 스마트 기기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업무처리, 교육, 의료 등 사회 전반에서 스마트 기술이 활용되는 '스마트사이어티(Smartciety)'로 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산업, 행정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눈부신 기술 발전 이면에는 해킹·바이러스 사고, 과도한 스팸 수신, 저작권 침해 및 명예 훼손, 보이스 피싱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와 정보 격차로 인한 소외 계층의 발생 등 정보화 역기능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처럼,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메일,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어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는 동시에,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 도용, 보이스 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미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규모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업 측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고객의 신뢰 상실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저하와 소송 등 송무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 실질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유·무형으로 기업 자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측면에서나 기업의 측면에 모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IT서비스의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 특히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유사사고 재발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상향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하여,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다시 말해, 이용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개인정보 제공 이전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0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으로써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 판시한 바 있으며(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대법원 및 하급법원 판례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에 항상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처럼 사업자가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사업자의 것이 아니며, 엄연히 해당 정보주체의 것으로, 사업자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소유물을 빌리려면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빌린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반납해야 하듯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도 해당 정보 주체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 판결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3. 개인정보란?

(1)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¹⁾의 요건을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요건은 ① 생존하는 ②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③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요건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생존하는 개인」이란?

-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이사의 성명, 이사·감사 등 임원 정보, 자산,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현재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나. 개인에 「관한」 정보란?

- '개인에 관한 정보'란 당해 개인에 대한 사실·판단·평가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법 제2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한」 정보란?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개인정보가 이미 통계적으로 변환되어 특정 개인이라는 사실을 식별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정보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마다 고유한 것이므로 개인을 손쉽게 식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독자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 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유형과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개인정보의 예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이메일 주소,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정보, 키, 몸무게 등 (의료·건강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病歷) 등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정보) 도서·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내면의 비밀 등)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재산적 정보	(개인금융정보) 소득,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동산·부동산 보유내역, 저축내역 등 (신용정보) 신용평가정보, 대출 또는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자격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등 (법적정보) 전과·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계급, 근무부대 등
기타	전화통화내역, 웹사이트 접속내역, 이메일 또는 전화메시지, 기타 GPS 등에 의한 위치정보 등

- 개인정보는 최초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 관련 정보는 대부분 이용자에게 직접 수집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 내역, 통화 기록 등이 포함된 로그기록, 위치 정보 등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됩니다. 이와 같은 생성 정보의 경우에도 개인을 식별하는 식별 정보와 연계될 경우 개인정보로서 보호 대상이 됩니다.

※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정보

- 사업자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기입하는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취미, 가족관계, 혼인여부, 출신학교 등

※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log), 쿠키(cookie), 결제 기록, 이용정지 기록, 페이지뷰 내역, 이용 시간대, 검색 사항, 사이트 방문 내역 등

- EU, OECD,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정보를 ‘개인을 식별하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자료, 기록)’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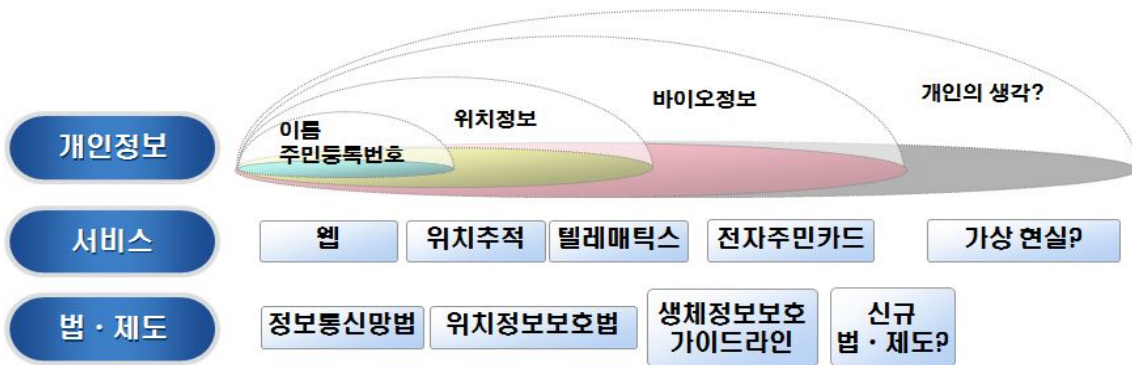
<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각 국의 입법례 >

구분	법령	정 의
OECD	개인정보보호지침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개인데이터(personal data)는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지칭
EU	개인정보보호지침 (Directive 95/46 EC)	개인데이터(personal data)는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지칭 ※ 식별 가능한 개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원 확인번호, 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요소를 참조하여 그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사람을 지칭
미국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1974)	개인기록(Record)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의 개개 항목 또는 그 집합 ※ 개인기록에는 당해 개인의 이름, 식별번호·부호, 지문, 성문, 자신과 같은 당해 개인의 고유한 식별자(identifying particular)가 포함
영국	개인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1998)	개인기록(personal data)은 신원확인이 가능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기록으로서, 그 기록 또는 다른 정보로부터 신원확인이 가능한 것을 의미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법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기명이나 무기명의 형식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연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처리하는 정보
독일	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1974)	자연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주체에 관한 인적 및 물적 환경에 관한 일체의 정보
스웨덴	데이터보호법 (Personal Data Act, 1998)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정보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생년월일 기타 기술(記述)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개인정보의 범위

- 인터넷, GPS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위치정보, 바이오 정보(지문·홍채 등) 등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개인정보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유형은 날로 다양해지고 범위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 발전에 따라 확대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4.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 기존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는 공공·정보통신·금융 등 각 분야별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 체계였으나, 2011년 9월 30일 공공·민간부문을 포괄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법과 개별법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분법 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 일반법과 개별법의 관계 등은 '5.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자세히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은 민간부문 중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실상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리·과기, 이용자의 권리 등 각 단계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2년 8월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방송분야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 정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② 영리를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거나 컴퓨터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2)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나.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친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합니다.
 - 기간통신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기업, 이동통신사 등 유·무선 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사업자입니다.
 - 별정통신사업자는 앞서 말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국제전화서비스, 재판매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기간통신사업자와는 달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사업자입니다.
 -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커뮤니티·미니홈피·블로그 등 일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소규모 부가통신사업) 이거나,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면제됩니다.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다른 사람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나 파일 등을 저장·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웹하드나 P2P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부가통신사업자와는 달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사업자입니다.

<별정통신사업별 주요 서비스 내용³⁾>

사업별	주요 서비스	서비스 내용 설명
설비보유 재판매 사업 (별정1호)	음성재판매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화역무(국내, 국제)를 제공
	인터넷전화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수신 하는 전화 역무를 제공 (단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간 음성 등을 송수신하는 것은 제외) ※ 게이트웨이(G/W)와 게이트키퍼(G/K)를 동시에 자체 보유한 경우 별정통신1호임
	인터넷접속	자체 교환설비(ATM스위치 등. 단, 라우터는 교환설비로 미인정)를 보유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구성함으로써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국제전화전용 회선재판매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제 음성·데이터 전용회선(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이를 분할 또는 전체로 재임대하는 서비스
	국제 콜백 서비스	요금어싼 나라의 사업자들이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진출하여 그 나라의 가입자가 거는 국제전화를 콜백 기능에 의해 자기 나라의 발신으로 처리해 주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
설비 미보유 재판매 사업 (별정2호)	호집중	여러 지역에 산재된 고객들을 영업·모집하고 그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통신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다량 할인을 받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서비스 (고객에게 직접 요금청구는 하지 않고 영업대행 수수료만 받음)
	재과금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1호사업자의 다량 할인제도에 기초한 차익 거래로부터

3) 참조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www.cmo.go.kr)

사업별	주요 서비스	서비스 내용 설명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로 통신사업자로부터 과금 자료를 받아 자신의 가입자에게 소매형태로 재과금(고객에게 직접 요금 청구)
	무선재판매	별정통신1호와 유사하나 자체 교환설비가 없는 점이 다름 (연동설비와 호 처리용 설비 중 한쪽만 보유) ※ 게이트웨이(G/W)를 임차하고 게이트키퍼(G/K)는 자체 설비인 경우 별정통신 2호임
	인터넷전화	별정1호와 유사하나, 자체 교환설비가 없는 점이 다름(연동 설비와 신호처리용 설비 중 한쪽만 보유) ※ 게이트웨이(G/W)를 임차하고 게이트키퍼(G/K)는 자체 설비인 경우 별정통신2호임
	인터넷접속	별정통신1호와 유사하나 자체 교환설비가 없는 점이 다름
	국내전용회선 재임대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고속·대용량의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저속·소용량으로 분할 또는 전체로 재판매하는 서비스
	주차안심 서비스	- 실시간 통화형 서비스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호출자와 차주의 실시간 통화를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 교환 기능이 있어 별정통신등록 - 메시지 전송형 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가 전화망과 지능망 설비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음성을 송신하는 것에 해당됨
	060 전화정보	060을 이용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실시간 통화형 서비스에 한함)
	송출대행 서비스	전기통신설비(송출장비,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타인(PP)의 통신을 매개(영상을 송신)하는 서비스
구내 통신사업 (별정3호)	구내통신 사업	빌딩, 아파트 등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를 제공 ※ 구내교환기 및 LAN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종합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 재판매 사업(별정 통신4호)	MVNO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 이동전화서비스망을 임대하여 자체 브랜드로 독립적인 상품 및 요금을 설계하여 고객을 유치·관리함

다. 영리목적의 정보 제공 및 제공 매개자

- 앞서 살펴본 전기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학술·종교·자선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순수하게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야 하므로, 법인 또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정보를 제공’**한다 함은 각종 정보를 게시·전송·대여·공유하는 등 일련의 정보 제공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미용, 관광, 영화, 뉴스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정보의 제공을 매개’**한다 함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와 제공받으려는 자를 연결시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우편 서비스와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영리목적의 정보제공 및 정보제공매개자’**는 인터넷 상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거나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웹호스팅업체, 인터넷쇼핑몰업체, 경매·커뮤니티·미니홈피·블로그 서비스 제공자, P2P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 사업자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대형 할인점과 같이 오프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 웹사이트의 회원 가입 메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와 같이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인터넷상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 한다면 업종과 상관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입장벽이 낮은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상 사업자의 규모나 회원 수가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밖에도 「인터넷주소자원예관한법률」 상의 인터넷주소관리자(법 제15조제2항) 또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자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유사한 정도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개인정보 취급이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할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4).
- 이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4) 제67조 (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①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로, ‘이용자’는 ‘시청자’로 본다.

분류	내 용
지상파 사업자	지상파 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위성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전광판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전송망사업자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수탁자에 대한 준용

○ 수탁자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부터 제24조의2와 26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합니다.(법 제67조제2항)

- 이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5) 이용자

-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자’는 일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다시 말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4호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예를 들어, 이동통신회사는 해당 통신서비스나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나 웹사이트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원으로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에 해당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단순히 상담을 하거나 일시적인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들 역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 역시 ‘이용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송사업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간주하는 법 제67조에서는 ‘시청자’를 ‘이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시청자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의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민간부문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금융 등 해당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과 같은 개별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개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는 없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용받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외에도 임직원, 주주, 제휴 업체 담당자 등 다양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용자’ 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추진 체계 등에 대한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으며, 차이점에 대해서는 조항별 해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성격	방송통신분야를 규율하는 특별법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일반법
적용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보호 범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
주요 용어의 차이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주관 부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원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2)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

-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및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사업자, 수탁자입니다.
 - 그러나 제공하는 용역과 재화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시 말해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특정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정보통신망법 이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이 있더라도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 해당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금융 거래 기록 등 신용 정보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보호법에서 일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웹사이트를 통해 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신용정보보호법 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조치 사항을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민간 부문에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은 정보통신망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에서 예로 든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동의 절차 등은 신용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따르되 개인정보 취급방침 수립·게시 등 신용정보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주요 규정

-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 및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각 조항별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주요 내용 >

조항	주요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고 이용자 동의를 획득하도록 규정
개인정보 수집 제한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을 규정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개정] 주민번호의 사용제한 (제2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불가 ※ 예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확인기관 지정 2. 법령에서 이용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체수단 제공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 받은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다른 목적으로의 이용 금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제24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고지하고 이용자 동의를 획득하도록 규정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규정
개인정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취급위탁시 수탁자명, 위탁업무 내용을 고지하고 이용자

조항	주요 내용
<p>취급위탁 (제25조)</p>	<p>동의를 획득하도록 규정(단, 서비스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취급방침을 통한 공개, 이용자 통지로 고지·동의 같음)</p> <p>※ (통지 방법)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p>
<p>영업양수 등 개인정보의 이전시 조치 (제26조)</p>	<p>o 개인정보 이전시 통지방법과 절차·이용범위를 규정</p> <p>※ (통지 내용) 개인정보 이전사실, 이전받는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 철회 방법 및 절차</p> <p>※ (통지 방법)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등 통지 불가시 홈페이지 30일 이상 게시</p>
<p>동의획득방법 (제26조의2)</p>	<p>o 개인정보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얻는 방법 규정</p> <p>※ 동의 획득 방법 (시행령 제1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 표시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가 동의의 의사 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5.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 획득
<p>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지정 (제27조)</p>	<p>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p> <p>※ 자격요건(각호 중 하나) (시행령 제1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 2.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고충처리 담당 부서의 장 <p>※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됨.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터넷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p>

조항	주요 내용
<p>개인정보취급 방침공개 (제27조의2)</p>	<p>o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p> <p>※ 7가지 공개 항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및 방법 2.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의 성명·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4. 개인정보 취급위탁시,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 처리부서의 명칭,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p>※ 공개 방법 (시행령 제14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등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표시 2.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 3.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
<p>[신설]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 (제27조의3)</p>	<p>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누출등) 사실을 안 때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및 방통위에 신고</p> <p>※ 통지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의 상담 등을 접수할 부서 및 연락처 <p>※ 통지 및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시행령 14조의2)</p> <p>⇒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출등의 항목이나 발생 시점 부지(不知) : 그 때까지 확인된 사항을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조치, 이용자의 상담 등을 접수할 부서 및 연락처와 우선 통지·신고 및 확인 즉시 추가 통지·신고 2. 이용자 연락처 부지 :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3. 천재지변 기타 홈페이지 게시 곤란 : 해당 보급지역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조항	주요 내용
<p>[개정]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8조)</p>	<p>o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사항을 명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부관리 계획 수립 2.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조치 4.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p>※ 내부 관리 계획 포함 사항 (시행령 제15조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p>※ 접근통제 장치 설치·운영사항 (시행령 제15조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4. 비밀번호의 생성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5.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p>※ 접속기록 위조·변조 장비를 위한 조치 사항 (시행령 제15조③)</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p>※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보안조치사항 (시행령 제15조④)</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조항	주요 내용
	2.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방지 조치사항 (시행령 제15조⑤) -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해야 함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제28조의2)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훼손·침해 또는 누설 금지
[개정]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 개인정보 이용 목적달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사업 폐업 시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서비스를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 등 필요한 조치 ※ 기간의 예외(시행령 16조) 1.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 정하고 있는 경우 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까지 파기되는 사실, 일시,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통지(시행령 16조④)
이용자의 권리 (제30조)	○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정정 요구권 ※ 동의철회권 :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철회 가능 ※ 열람·정정 요구권 : 다음 사항에 대한 열람·제공 및 오류 정정 요구 가능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이용자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를 한 현황
[신설]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조항	주요 내용
(제30조의2)	<p>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시행령 17조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항목, 제공받는 자, 그 제공 목적 및 제공 항목, 취급위탁한 수탁자 및 그 목적 ※ (통지방법)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p>법정대리인의 권리 (제3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 열람·오류 정정 요구 권리 행사 가능
<p>손해배상 (제3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고의·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음
<p>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6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시 이용자의 동의 및 고지사항 항목 명시

II.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획득 의무

- 1.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조치**
- 2.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금지**
- 3.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시 동의조치**
- 4.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조치 사항**
- 5. 동의 획득 절차**
- 6.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 7.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1.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조치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 법 규정 취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회원가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을 때는 어떤 개인정보를 왜 수집하고 언제까지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 알기 쉽고 명확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2) 사업자 조치 사항

-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 시점(회원 가입, 서비스 가입 등) 이전에 이용자가 ①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3가지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명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3) 해설

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3가지 사항들을 이용자가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아래의 예와 같으며, 이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의 예 >

정보통신 서비스 가입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혹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을 위해 가입자의 정보 수집 등
	웹사이트 회원가입	○ 온라인 쇼핑몰, 게임, 포털 사이트 등 영리목적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의 회원가입 정보 수집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복권 사이트 등 금융 거래와는 무관한 사이트의 회원가입이나 운영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등 ○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더라도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의 회원가입 정보 수집 등
온라인 예약·상담		○ 대출 업체·보험회사 등에서 대출 및 보험가입상담을 위해 상담자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
게시판		○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고객 문의 사항 및 후기 등에 대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게시자의 성명, 연락처 등 수집
이벤트 개최		○ 경품 행사 등 이벤트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나. 동의를 얻는 방법

○ 동의를 얻으려면 회원 가입 화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예) 본인 확인, 고지 사항 전달, 물품배송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예) 이름, 전화번호, 접속 내역
-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예) 회원탈퇴 등 서비스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주의 : 중요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법률의 취지이므로, 개인정보취급방침 전문을 게재하고 일괄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은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용자 동의 사항 게재 및 동의 방법의 예]

① 회원 가입

개인정보 수집 항목, 목적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이메일주소 -자택/휴대전화 -자택/직장주소 -기념일(생일정보) -포인트 거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가 제공하는 회원제 서비스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활용 - 공지,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의 경로 확보 -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벤트 정보 제공 - 당사가 집행하는 제휴행사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텔레마케팅 자료로 활용 - DM,강품 및 소핑 물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 확보 - 기념일 쿠폰 및 이벤트 정보 제공 -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및 서비스 개발 	탈퇴 시 까지
		<input checked="" type="radio"/> 동의함 <input type="radio"/> 동의안함

② 상담, 게시판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상담 요청에 대한 회신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음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함
 -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동안 안전하게 보유되고,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이용하게 됨
- 개인정보 입력

성명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이메일 주소	<input style="width: 60%;"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 type="text"/> <input style="width: 20%;" type="text"/> 직접입력 <input type="button" value="v"/>
연락처	<input style="width: 20%;"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 type="text"/>

③ 경품, 이벤트 개최시

<input type="checkbox"/> 경품, 이벤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경품 당첨 시 본인확인과 경품배송 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벤트 종료시(경품당첨 및 배송완료 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 단순히 '텔레마케팅에 활용'한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고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목적외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24조5)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은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에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매출액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최초의 수집 시점에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부분을 이용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금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사항은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금 정보, 통화 사실 기록(도수), 접속 로그(log), 결제 기록, 이용 정지기록 등의 정보들과 같이 불가피하게 생성되어 발생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어 수집되지만, 이용자에게 매번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비용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 이러한 정보들을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통해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을 이용자에게 명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이용하면 목적외 이용에 해당되어 과징금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서비스별 요금액, 납부 또는 미납한 사실, 미납액 등에 관한 정보들은 요금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별도로 개인정보의 수집을 규정한 조항이 있으면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 >

▶ 정보통신망법 제31조6)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등을 위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7가~라목

-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본인의 허락 없이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6)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Tip)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3가지 사항 외에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혹은 **개인정보취급을 위탁처리**하는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해서는 이번 장의 “3.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시 동의조치”에서, 그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5. 동의획득 절차”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 벌칙 및 행정처벌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등 3개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매출액의 1/100 이하의 과징금 (법 제64조의3제1항제1호)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71조제1호)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7)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동의 획득 사항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동의 거부권에 대한 사실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 획득시 필요 사항>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작동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별도 규정 없음	동의 거부권에 대한 사실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의 받아야 하는 사항 음영 표시

2.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금지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규정 취지

-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받은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집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용 목적이 발생했거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바뀌었다면 이용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들은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수집 및 이용 목적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동 예외 사유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 사업자 조치 사항

-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은 수집 및 이용 목적 안에서만 활용
-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의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예외 조항 범위 안에서만 활용
- 추가적인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발생하는 등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음

8) ①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해설

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는 경우

-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최초의 시점에 동의를 받습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은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 그러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집 및 이용 범위가 추가되거나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다시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동意的 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동의를 추가적으로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받지 않은 자사 상품의 통신판매 광고에 이용
 - 고객 만족도 조사, 판촉행사,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물 발송에 이용
 - A/S센터에서 고객 불만 및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신상품 광고에 이용
 - 회원가입을 위해 제공한 정보를 회원가입과 무관한 우편주문판매에 이용 등

나.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 법 제22조제2항에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집 및 이용 목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규정한 범위 안에서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 예외 사항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은 통화 기록, 접속 로그, 결제 기록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실시간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정보로 앞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통화 기록은 이용자가 유선·무선전화를 이용하면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정보들입니다. 이 정보들은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유선이나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통화 기록을 분석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용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요금 정산을 위해 수집한 요금액, 납부 또는 미납 사실 등에 관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요금 정산의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했다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목적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벌칙 및 행정처벌

○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 매출액의 1/100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법 제64조의3제1항제3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법 제71조제3호)

○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고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법 제71조제3호)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에 비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에 개별 규정이 있어 이를 우선 적용하게 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 근거 법령 >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시 동의조치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1) 법 규정 취지

- 사업자가 업무 제휴, 공동 마케팅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되고 이용되는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침해 위험 또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제공 여부를 이용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업자가 제3의 기관에 자사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기업이 경영 효율성 제고,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다수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이 요즘의 사회·경제적 추세이므로 해당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통신회사들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개통을 위해서 전국 각지의 설치 대리점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 업체들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본사가 아닌 외부의 수탁업체이므로 이들 업체로 하여금 가입자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얻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업에게도 곤란하고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4항은 위탁 업무를 주는 본사로 하여금 수탁업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 제공과 위탁을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취급 위탁업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제3자 제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동의 획득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 다시 말해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위탁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모두 이용자가 믿고 신뢰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이지만,

- 오늘날 많은 사업자들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위탁을 행하고 있으므로 위탁 업무의 경우에는 제3자 제공과는 별도로 상이한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 조치 사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
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④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①수탁업체명 ②수탁 업무 내용을 알리고 동의 - 단, 서비스 이용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

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의 받을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여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④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 4가지 항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다시 말해 ①누구에게 ②어떤 이유로 ③무엇을 제공하였고, ④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보유하는 지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또한,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획득 예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당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서비스 및 이벤트 정보 안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 (제휴카드 발급자에 한함) ○ ○카드사 (제휴카드 발급자에 한함)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인트 거래에 필요한 본인확인 ○ 포인트 거래 대금 정산 ○ 고객문의 및 불만에 대한 해결 ○ 제휴행사 및 서비스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포인트카드 번호, 거래정보, 주소, 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인트 회원 탈퇴시
<input type="radio"/> 동의함 <input type="radio"/> 동의안함		

○ 제3자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 이외의 모든 개인·법인·조직을 뜻합니다. 계열사이거나 본사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조직일지라도 별도의 법인이라면 제3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영업 양수인이나 인수합병 회사는 양도인, 피인수 회사 및 피합병 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므로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합병에 따라 개인정보가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는 사실에 대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 양도·양수 사실에 대해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Ⅲ.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의 '7. 영업 양수·양도시 조치 사항'을 통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취급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폐기 등)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①개인정보 취급을 위탁받는 자 (수탁자)와 ②개인정보취급위탁의 업무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법 제25조제1항).

- 다시 말해, 제3자 제공과는 다르게 개인정보를 ①누구에게 ②왜 주는지에 대해서만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개인정보 취급 위탁 동의 예시>

의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① ○○○는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고객 정보 DB시스템 위탁 운영 (전산 아웃소싱) : (주) I&C	나. 고객 불만 접수 처리 등 민원처리 : I&C	다. DM 발송 위탁: 아림, 빌포스트
라. SMS 발송 위탁: 엠, 원, 꿈	마. 설명화면 서비스 위탁: 신용평가	바. 개인정보 수집 위탁: (주) 은행(카드에 한함), (주) 카드(카드에 한함), (주) M&C(카드에 한함), 은행(카드에 한함)

②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 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 내용을 서면 및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 업체가 변경될 경우, 회사는 변경된 업체 명을 개인정보취급방침 화면에 공지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시행령 제10조)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2항).
 -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위탁에 대해서는 ①누구에게 ②왜 주는지에 대해서 이용자가 알도록 조치하면 되고,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수탁업체가 많을지라도 해당 수탁업체명을 모두 열거하여 동의(법 제25조제1항)를 얻거나 공개·통지(법 제25조제2항)를 하여야 합니다.
 - 특히 동의를 얻어야 하는 수탁업체는 관련 업체명을 동의 절차에 모두 명시하고 이용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다만 서비스 이용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위탁으로서 단순 공개·통지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수탁업체는 수백에서 수천 개에 달할 수 있습니다(예: 이동통신사 대리점). 이 경우에는 대표 수탁업체명과 업체 수를 기재하되 링크(웹사이트)를 통해 상세 내역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예시) 통신망의 설치·개통, A/S, 동의 철회 시 장비의 회수 등 : 000통신 등 총 1181개

- 수탁업체나 위탁업무가 변경될 때에도 동의 혹은 공개·통지 절차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25조제2항).

※ 단, 수탁업체가 변경되지 않고 동일한 업체가 단순히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 참고 >

◎ 동의, 통지, 공개·게시의 구분

- 정보통신망법에는 이용자가 조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통지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단순 안내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조치 사항은 다르지만, 이용자와 연락을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이에, 동의·통지·공개·게시에 대한 방법상의 차이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여기서는 회원가입을 한 후에 추가적으로 동의 받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최초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 동의는 이용자와 ①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야 하고 ②반드시 이용자로부터 회신 등의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최초 수집 이후에 이용 목적 확대, 제3자 제공 등으로 추가적인 동의를 얻으려면 전화, 이메일 주소, 우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
- (통지) 통지는 이용자와 ①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야 하지만 ②회신 등의 피드백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업 양도·양수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주소, 우편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되고 별도로 회신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공개·게시) ①개별적인 연락처를 활용할 필요도 없고 ②회신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의 공지사항 코너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개인정보취급 방침과 같이 게시 장소가 법률로써 특별히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동의·통지·공개/게시안내 방법의 비교>

구분	요건	예시
(추가)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동의를 받은 사항 외로 수집·이용 목적 확대, 추가적인 제3자 제공 및 위탁 처리 등이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을 대상으로 동의 받은 목적외로 텔레마케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 제휴하여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개별 연락처를 활용하여 해당 내용을 전송한 후 적극적인 동의 의사가 표시된 회신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우편, 서면, 팩스 등을 통해 동의서 전송 후 동의의사가 표시된 자료를 회신 받음 ○ 전화로 동의 사항 설명 후 구두로 동의 획득 등
통지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양수·양도가 발생한 경우 ○ 개인정보 취급 위탁 사실을 통지 (서비스 이용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공개로 같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하고 있던 웹사이트를 다른 업체로 양도하는 경우 ○ CS센터 운영 업체가 변경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개별 연락처를 활용하되 회신을 받을 필요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우편,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해당 사항 전송 등
공개 ·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취급 위탁 사실 공개 (서비스 이용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통지로 같음 가능) ○ 개인정보 취급 방침 공개 ○ 영업·양도 양수 사실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발송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 개인정보 취급 방침 및 그 변경 내역을 공개 ○ 운영하고 있던 웹사이트를 다른 업체로 양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연락처를 활용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공지사항 혹은 팝업창 게시 등

(3) 해설

가.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 위탁과 제3자 제공은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해당 사업자가 아닌 외부로 제공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탁과 제3자 제공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탁이란 자신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타인(제3자)에게 그 책임과 권한을 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은 위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즉,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측의 사업목적'을 위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반면 위탁은 '제공하는 측의 사무처리'를 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인터넷 게임 사이트가 고객센터 운영을 위해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사이트가 보험 회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보험 TM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게임 사이트 본래의 계약 목적인 인터넷 게임서비스 제공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는 오로지 보험회사의 상품판매라는 사무처리를 위해 활용되는 것이므로 제3자 제공으로 보아야 합니다.

○ 위탁업무에서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은 이용자가 계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수반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업체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 제3자 제공에서는 당초 이용자와 계약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외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 행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이를 종합하면, 개인정보 취급위탁과 제3자 제공은 모두 개인정보가 동의를 받은 사업자에게서 다른 사람(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 그러나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취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자(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제3자 제공은 그 제3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그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취급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이후에는 제3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며, 제공자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 위탁 및 제3자 제공의 예 >

업무 위탁		제3자 제공
고 지 업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불만 접수 처리 등 민원 및 서비스 안내 대응을 위한 고객 센터 아웃소싱 ○ 대리점 등 외부 영업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자가 신청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을 위해 부가서비스 업체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 수집한 가입신청서의 전산 입력 아웃소싱 ○ 고객 정보 DB 및 고객 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등 전산 아웃소싱 ○ 요금 고지서 발송 대행 ○ 물품 배송 및 서비스 A/S 아웃소싱 ○ 이벤트 당첨 고객에 대해 경품 배송 위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회사가 보험 영업 TM에 이용하도록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 ○ 포털 사이트가 자회사인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의 TM에 이용하도록 전체 회원 정보를 자회사에 제공 ○ 인터넷기업이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이벤트를 개최하여 응모한 고객 정보를 카드 판촉 활동에 이용하도록 카드회사에 제공 등
동 의 업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 상품 홍보를 위한 텔레마케팅 등을 위탁하는 경우(예 :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자사의 인터넷 전화, IPTV, 결합 상품 등을 홍보) ○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PC보안서비스 및 유해매체 차단 등 자사 명의의 부가적인 서비스 가입을 위한 텔레마케팅을 위탁하는 경우 등 	

○ 개인정보 취급위탁은 본사의 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파기 등의 취급 업무가 수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통상적으로 본사와 수탁 업체 간에는 용역계약 혹은 위탁계약을 맺는 경우가 빈번하나 계약의 형태나 명칭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본사의 업무를 제3의 업체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취급이 발생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나. 위탁업무의 구분

○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위탁업무(법 제25조제1항)와 단순히 공개·통지(법 제25조제2항)로 갈음할 수 있는 위탁업무를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개·통지로 처리 가능한 위탁 업무

- 이용자와 계약을 맺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탁 업무의 경우, 이용자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었다고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탁업무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효율적인 물품 배송을 위해 A 배송 업체와 계약을 맺어 배송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송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주문자와 수취인의 개인정보들의 취급 또한 위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해당 배송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거부한다면 이용자는 원활한 물품 배송을 받을 수 없어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물품 배송 업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탁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처럼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위탁업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계약을 맺은 경우 통신망 개통, A/S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업무위탁
 - 온라인 쇼핑몰이 이용자와 계약을 맺은 물품 판매 서비스를 완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물품 배송 업무위탁
 - 고객 정보 취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SI업체에 아웃소싱
 - 고객의 불만 처리 접수 및 서비스 안내 등을 위해 고객응대센터(콜센터)를 외부 업체에 위탁
 -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해 리서치 업체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용평가사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위해 결제 대행사(PG)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위탁 업무

○ 이용자와 계약한 주요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한 부가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는 것은 그 성격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위탁업무의 경우에도 동의를 얻는 절차를 조치하는 것 외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세부적인 동의 획득 절차에 대해서는 이번 장의 '5. 동의 획득 절차'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사례

- 일시적인 이벤트 혹은 경품 행사의 운영 업무를 홍보대행사에 아웃소싱하는 경우
- 포털 사이트 내 맞춤형 온라인 광고를 위해 포털 사이트 운영사가 온라인 광고 아웃소싱 업체에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상기 위탁업무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획득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부가서비스에 대한 자사업무 판단기준(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4)

- ① 당해 부가서비스가 본래의 통신서비스에 부수되어 시행되는지
- ② 개인정보 제공이 당해 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한정되는지
- ③ 부가서비스가 당해 통신사업자의 고객에 한정하여 시행되는지
- ④ 통신사업자 '명의'로 부가서비스가 시행되는지

※ **부가서비스란?** 본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동 가이드에서는 본래 서비스 제공 사업자외 제3의 사업자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서비스를 본래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에는 유해 정보 차단 서비스, PC 보안 서비스 등이 부가서비스에 해당됩니다.

(Tip1) 판촉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많은 기업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벤트는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위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시점에 이벤트의 개최 여부 및 시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원 가입 이전에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벤트 팝업창 및 응모 화면에 위탁업체명, 위탁업무명을 명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Tip2) 개인정보 취급업무 자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외부 업체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할 때에는 위탁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서에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도급 계약이 명시되었으면 위탁 관계로 볼 수 있으나, 단순한 인력 파견 계약을 맺고 해당 인력을 본사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면 위탁관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개별 사례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재위탁하는 경우

-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탁 업체가 본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외부 업체에 재위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본사가 이용자에 대한 동의 혹은 공개·통지 절차 없이 개인정보 취급업무의 재위탁을 허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 목적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 따라서, 수탁업체가 수탁받은 업무를 외부 업체에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본사는 이에 대한 동의 혹은 공개·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또한, 수탁업체가 본사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재위탁함으로써 본사가 법률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위탁 계약서에 명시하여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 관련 사례 >

- 대형 시스템 통합(SI) 업체에 고객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그중 일부 개발 업무를 중소 SI 업체에 하청을 준 경우
 - 본사는 대형 SI 업체와 재하청을 받은 중소 SI 업체의 업체명과 업무명을 명시해야 함
- 홍보대행사에 이벤트 개최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홍보대행사에서 경품 배송을 택배업체에 다시 위탁한 경우
 - 본사는 홍보대행사 및 택배업체의 업체명과 위탁업무명을 명시해야 함

라. 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 정보통신망법은 본사가 수탁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5조제4항).
 - 본사는 업무위탁 계약서를 통해 취급 목적 등 수탁자가 행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수탁자가 위탁업무와 관련해 부여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탁 업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쳐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수탁업체를 본사의 직원으로 간주합니다(법 제25조제5항).
 -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받은 수탁업체 또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업체 또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수행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한 개인정보보호 의무 사항을 조치해야 하며, 수탁업체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수탁업체 또한 행정처분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항 >

정보통신망법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의2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4) 벌칙 및 행정처벌

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매출액의 1/100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법 제64조의3제1항제4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법 제71조제3호)
-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정을 알고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법 제71조제3호)

나.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 또는 알리지 않은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76조제2항제1호)
-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한 경우
 - 매출액의 1/100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법 제64조의3제1항제5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71조제4호)
- 제공 또는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않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76조제3항제2호의5)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동의 획득 사항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동의 거부권에 대한 사실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 획득 필요 사항>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작동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별도 규정 없음	<u>동의 거부권에 대한 사실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u>

나.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위탁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공개하고 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는 등 정보통신망법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망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 근거 법령 >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다. 이용자 대상 고지 및 동의 관련

○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시 동의 획득을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 계약 내용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의 대신 고지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탁사실에 대한 별도의 동의 의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재화·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업무의 경우에만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알릴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탁사실 고지 및 동의 사항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수탁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 획득을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 계약 내용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의 대신 고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동의 획득 필요 사항 >

위탁 업무의 성격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서비스 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위탁 업무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취급 위탁 업무의 내용에 대해 동의 획득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받는 자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공개
그 외 위탁 업무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취급위탁업무의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	<재화·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 전송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거나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라. 위탁 업무 처리 절차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업무위탁에 별도의 보호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대해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련 문서 포함 사항>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취급업무위탁 처리시 상기의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문서에 의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①인력, ②물적 시설, ③재정 부담능력, ④기술보유정도, ⑤책임능력”과 그 밖에 수탁자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처리를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계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표준지침 제19조제1항)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를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①수탁자의 처리업무를 지연, ②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③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표준지침 제19조제2항)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탁업체 선정 시에 상기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9) 2011.9.30. 제정, 행정안전부예규 제45호,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내 <자료실>-<지침자료>를 통해 다운 가능

마. 수탁 업체 관리·감독

- 정보통신망법은 수탁업체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수탁업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탁업체를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
 -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
 -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위·수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확인·점검
 - 수탁자의 개인정보처리 현황 및 실태, 목적외 이용·제공, 재위탁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점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탁업체를 교육하고 개인정보 처리시 법률 및 계약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조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조치 사항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규정취지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인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그러나 아동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과 정보를 평가하거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 자칫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가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 조치사항

- 사업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①수집·이용목적 ②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3가지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해설

가. 법정대리인

- 대개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친권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지정 후견인이,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취임하게 되는 법정후견인이, 지정후견인도 법정후견인도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선임된 선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¹⁰⁾
- 민법에서 정한 법정후견인의 순위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 즉 법정대리인이 됩니다.¹¹⁾

나. 법정대리인 동의획득 방법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그런데 아동이 항상 법정대리인과 함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이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 법정대리인을 반드시 대동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우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불편한 일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활용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정보 수집에 대해 해당 정보 주체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수집한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정보는 당연히 동의 획득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 민법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1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후견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서명 날인한 서류를 제출받는 방법
- 법정대리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하는 예 >

○ **(휴대전화 개통)** 만 14세 미만 아동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가입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란을 마련합니다.

○ **(웹사이트 가입)**

- ① 일반 회원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경로를 별도로 구분합니다.
- ② 아동에게는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사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문의하는 내용을 알립니다.
- ③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으면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법정대리인이 동의에 대해 회신하지 않으면 수집한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파기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아동이 제공한 정보가 진정한 법정대리인의 정보인지, 법정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아동과 나이차가 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아동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해당 법정대리인에게 기계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동이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회원탈퇴를 하는 등 아동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시점까지는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고지해야 합니다.

(4) 벌칙 및 행정처벌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매출액의 1/100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법 제64조의3제1항제7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법 제71조제8호)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에 개별 규정이 있어 이를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하면 됩니다.

<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5. 동의 획득 절차

(1) 동의 획득 절차

<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

법률 조항	주요 내용
제22조제1항	개인정보를 최초 수집하거나 수집한 이후에 동의를 얻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3조제1항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제24조의2제1항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24조의2제2항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25조제1항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할 경우
제26조제3항	영업양수자 등이 목적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제공할 경우
제63조제2항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할 경우

< 관련 규정 >

정보통신망법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 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동의획득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원 가입이나 서비스 가입 등을 위해 최초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회원가입 시점에서 이미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이 계획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확장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은 구체적인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12조).

- **(인터넷 사이트)** 동의를 구하는 화면 또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회원가입화면, 로그인 화면 등)

※ <예시>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 가입 절차에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게재하고 '동의함' 또는 '동의 안함' 중 하나를 클릭(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 **(서면)**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이용자가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는 방법

※ <예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백화점·항공사·호텔 등에서 회원카드를 발급할 때 가입신청서에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대해 가입자가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 방법

- **(전자우편)** 동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우편을 발송한 후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예시> 동의 내용을 전자우편에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를 입력하게 하거나 동의란에 체크하도록 한 후 전자우편으로 회신 받는 방법

- **(전화)** 서비스 신청을 위해 사업자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용자가 전화를 하는 경우, 상담원 등이 직접 동의 내용을 구두로 알려주어 동의를 받거나, 동의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전화 통화를 걸어 동의를 얻는 방법

※ <예시> 전화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 상담원 또는 ARS 등으로 동의할 사항을 알려주고 동의를 얻는 방법 또는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을 알려주고 재차 전화를 걸어 동의를 얻는 방법

- 특히,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를 최초로 수집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과는 별도로 관련 사항을 눈에 띄게 표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또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취급업무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등 일반적인 동의 내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특히,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사항은 각각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가입과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이는 원치 않는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동의해야만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관련 규정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의 획득 예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A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성명, 이메일 주소	개인 식별, 공지 사항의 전달, 신상품의 소개	회원탈퇴 시 삭제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원활하고 상시적인 서비스 제공, 분쟁 해결	회원탈퇴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삭제

동의함 동의 안함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여부
B게임사	게임 신상품 소개 메일 발송, A사와의 제휴 상품 소개 메일 발송	성명, 전자우편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삭제	제공 <input type="checkbox"/>
C쇼핑몰	A사와의 제휴 적립카드 소개를 위한 텔레마케팅	성명,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삭제	제공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동의 안함

<위탁 동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D인포서비스	E사와의 제휴 상품 소개
F리서치	신규 이벤트 추진 시 설문 조사

동의함 동의 안함

(2) 벌칙 및 행정처벌

- 동의 받는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법 제71조제1호~제4호)

(3)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동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에 개별 규정이 있어, 이를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획득하면 됩니다.

<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6.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1) 법 규정 취지

- 인터넷서비스에서 관행적으로 수집되어 온 주민등록번호가 관리자의 부주의나 해킹 등의 사고로 인하여 유출될 경우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 등의 범죄에 악용되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사업자 조치 사항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확인기관이거나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불가피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각 사업자들은 고객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의해 수집·이용이 허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서비스 절차 및 시스템 등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법령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하도록 하고 있어 2014년 8월 이전까지 삭제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과 개인식별이 가능한 아이핀(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라는 대체수단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 아이핀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아이핀 홈페이지(<http://i-pin.kisa.or.kr>)에 참고자료와 함께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 아이핀 이외에도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대상, 금융실명거래법 등 타법에 따른 예외범위에 대한 상세 해석, 주민등록번호 대체방안 등 주민등록번호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i-privacy.kr)

(3) 벌칙 및 행정처벌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76조제1항제2호)

(4)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p>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p>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p>	<p>제20조(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가입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p>2. 공공기관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주체의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체 가입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명칭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제공할 수 있는 대체가입수단의 종류 및 내용 3. 대체가입수단의 제공 기한
<p>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 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p>	

-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본인확인기관,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의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의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 식별 번호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에 대해서도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률 규정 외에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향후 주민번호 최소화 대책(국가정책 조정회의, '12.4.20)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고유 식별 정보 유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제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획득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	별도 규정 없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획득

- 또한,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에서는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번호의 수집 · 이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이외의 고유식별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수집시 별도로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고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규정 취지

-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특히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거나 현저히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는 보다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 또한,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저장하고 있으면 해킹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오·남용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2) 사업자 조치 사항

- 개인의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민감 정보는 ① 이용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획득한 경우, ②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특별히 수집대상으로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시에는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로 구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3) 해설

가. 민감 정보 수집 제한

(가) 민감 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은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① 이용자 동의에 의한 경우나 ②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민감 정보의 종류

- 정보통신망법은 사상, 신념, 병력 외에는 민감 정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민감정보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참고하여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세부 기준¹²⁾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상·신념’이란 개인의 가치관에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유체계, 개인이 굳게 믿고 지키고자하는 믿음·생각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을 말합니다.
 - ‘정치적 견해’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입니다.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란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드시 적법한 노동조합이거나 정당일 필요는 없습니다.
 -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 취향 등에 관한 정보입니다. 혈액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12)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141쪽, 행정안전부, 2011.1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상 민감정보의 종류(영 제18조)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등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필요 최소한의 정보 기준은 업종 및 서비스 유형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성명, 전자우편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마케팅 등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적 항목으로 제시하여 이용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다시 말해 이용자가 선택 항목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회원 가입 등에 있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벌칙 및 행정처벌

- 이용자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 매출액의 1/100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법 제64조의3제1항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법 제71조제2호)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미제공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76조제1항제1호)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는 별도 동의 획득 의무는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보 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별도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는 별도로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III.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

1. 개인정보의 파기
2.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3. 이용자 권리 보장
4.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5. 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
6. 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7. 영업 양수·양도 시 조치 사항
8.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 개인정보의 파기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1) 법 규정 취지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사업자의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회원탈퇴했거나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처럼 개인정보를 빌려온 목적이 사라지면, 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도 당연히 파기해야 합니다.

(2) 사업자 조치 사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①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하였거나 ②이용자에게서 동의를 얻은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③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3) 해설

가. 개인정보 파기시점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은 보유 및 이용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유 목적 또한 사라지므로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지체 없이 파기'는 합리적 이유 및 근거가 없는 한 즉시 파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 이용자가 웹사이트 회원에서 탈퇴한 경우
-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한 경우
- 이용자가 마트 마일리지 회원에서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벤트가 종료된 경우
- 제3업체에 기획 텔레마케팅(TM)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후 해당업체의 TM 업무가 종료된 경우 등

○ 위와 같이 통상적인 수집 및 이용목적은 달성한 이후에도 요금 정산 등의 경우처럼 개인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으면 해당 사유가 소멸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유하고 있는 해지 고객의 정보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다만,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고 보유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 또한 해지 후에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하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 이용자에게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얻은 기간이 경과한 경우
 - '회원탈퇴 후 재가입방지를 위해 성명, 전화번호를 6개월간 보유합니다.'
 - 라고 동의를 얻고 회원탈퇴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 다른 법률 규정 등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보유 및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때 필요한 전화번호, 위치추적자료, 전기통신일시 등의 경우 12개월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의 경우 5년
-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보유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 요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 시점까지 보유 가능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나. 개인정보 파기방법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나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해야 하고,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기록은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데이터 복원을 방지하기 위해 '로우레벨포맷¹³⁾' 명령으로 포맷을 하거나, 일반 포맷을 한 뒤 불필요한 정보를 여러번 덮어쓰우는 방법 등으로 다시는 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가 저장된 하드웨어 파기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하드디스크를 폐기처분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디스크를 파쇄하거나, 디가우저(Degausser: 데이터 소거장치)라는 자기장치를 이용해 강한 자기장으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하드디스크를 옮기는 과정에서 분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번 폐기하고 난 하드디스크는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실용적인 방법으로 영구삭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포맷이나 로우레벨포맷(공장초기화 포맷) 등은 복구 도구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지만 영구삭제 소프트웨어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 위에 의미 없는 데이터를 여러번 반복해 덮어쓰(Overwrite)으로써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듭니다.

13) '로우레벨포맷'이란 하드디스크를 공장에서 나온 초기상태로 만들어주는 포맷을 말함. 일반 하이레벨포맷은 파티션을 나눈 디스크드라이브의 내용을 없애주지만 로우레벨포맷은 파티션 구분까지 삭제함.

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관리 방법

- 이용자가 회원탈퇴 혹은 서비스 해지 등으로 동의를 철회한 이후에도 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해야 할 경우에는 동의를 철회한 시점 이후에 개인정보가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는 가입고객 DB와 분리해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일반 직원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접근 권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DB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전산 장비를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 외에도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DB 분리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해지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일반고객정보와는 다르게 보다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업무상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를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열람 혹은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라. 제3자 및 수탁업체에 제공한 정보 파기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업무 제휴 등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정보를 파기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제휴 계약서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파기 의무 등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계약대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에도 위탁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해 파기 사유가 발생하면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탁업체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서상에 수탁자의 개인정보 파기 여부 및 파기 방법을 명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4) 벌칙 및 행정처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사업 폐지 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76조제1항제4호)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파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에 개별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2.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 달리 정한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도래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 또는 분리하여 저장·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미이용 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은 2012년 8월 18일 이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기산한다.

(1) 법 규정 취지

- 최근 발생하는 개인정보 누출 사고에서는 사고 당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자의 개인정보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사업자 조치 사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3년의 개인정보 유효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또는 별도 분리 저장·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한 경우에는 3년 이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해설

가. 개인정보 유효기간

- 파기 또는 분리 저장·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은 별도의 예외 사유가 없다면 법령에 따라 3년입니다.
 -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경과 후 조치사항 등 본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이용약관 등에 추가·반영하고,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 유효기간(3년)의 예외

-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3년 이외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 국세기본법, 상법 등에서처럼 법령상의 책임이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별도의 기간(소멸시효 등)을 명시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캐쉬백, 포인트, 마일리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도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른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명시된 법령 예시 >

근거법령	개인정보의 종류	보존기간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	로그기록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	3개월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사용도수,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12개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거래기록)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기록)	건당 거래금액 1만원 이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1년
	전자금융거래 종류 및 금액, 상대방에 관한 정보,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전자금융거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 1만원 초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업무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의료법 (진료에 관한 기록)	처방전	2년
	진단서 등의 부분	3년
	환자 명부, 검사소견기록, 간호기록부,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조산기록부	5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10년
국세기본법	국세 부과 제척기간(조세시효)	10년
	국세징수권 및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5년
상법	보험금액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2년
	상사채권 소멸시효, 배당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
	사채상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
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10년

○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3년 이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유학, 군입대, 입원, 질병 등으로 장기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3년 이외의 유효기간을 요청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3년 이외의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자 할 때,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여 요청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①)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년으로 요청합니다.

※ 다만,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1년
(예시②)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5년 7년 으로 요청합니다.

※ 다만,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 정보통신서비스 미이용 판단 기준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또는 가입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마지막으로 이용한 이후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효기간 동안 이용한 기록이 없다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미이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용약관 등을 통해 그 적용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초고속인터넷, 핸드폰 등과 같이 오프라인 서비스 가입 후 웹사이트(온라인)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의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없더라도 오프라인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은 미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존 가입자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미이용 기간은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2년 8월 18을 기점으로 산정합니다.

라. 개인정보 파기 및 분리 저장·관리 방법

○ 개인정보 파기 방법

-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효기간 동안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재생할 수 없는 상태로 파기해야 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나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해야 하고,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기록은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로우레벨포맷 등)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분리 저장·관리 방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파기에 준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분리 저장·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일반 회원(고객)의 개인정보 DB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일반 직원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접근 권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전산 장비를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 외에도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분리 저장·관리되는 개인정보는 재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태임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재이용(계정 활성화)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또는 형사소송법(제106조 압수, 제109조 수색, 제139조 검증),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의 절차, 제13조의2 법원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제13조의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등),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법률 예시 >

□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⑨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③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 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마. 파기 등 조치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

-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의 파기 등 조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수정 등의 단계에서 수집·관리되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접속 로그(log), 쿠키(cookie), 결제 기록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도 파기 등 조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등 직접 수집하는 인적정보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해당 정보도 파기 등 조치 대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바. 유효기간 도래 통지 시기 및 방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팩스), 전화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가 파기 또는 분리 저장·관리가 되는 사실 및 일시, 개인정보 항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 연락처 부재·변경·오류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 또는 분리 저장·관리되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였으며, 통지의 오배송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신규 회원 가입시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 제도의 주요 내용을 공지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는 공지사항, 전자우편 등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유효기간 도래 후 개인정보가 파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사실 및 정확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수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벌칙 및 행정처벌

- 유효기간 경과 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또는 별도 저장·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76조제1항제4호)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효기간 경과 후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또는 분리 저장·관리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 임직원의 개인정보 등 ‘이용자’(고객)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치하면 됩니다.

Q&A**기산점 및 조치 시점**

Q1. 기존 가입자의 미이용 기간 기산점과 파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 인가요?

A. 기존 가입자의 미이용 기간은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2년 8월 18일부터 기산합니다. 그리고 3년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거나,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별도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즉시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 저장·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반드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시행령 부칙 제2조(미이용 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은 2012년 8월 18일 이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기산한다.

☞ 예시 : 2012년 8월 18일부터 기산 → 2015년 7월 18일까지 사전통지 → 2015년 8월 18일 파기 또는 별도 분리 저장·관리

Q&A**수사기관에의 제공**

Q2. 별도 분리 저장·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나요?

A. 수사기관 등이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별도 분리 저장·관리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Q&A**조치 대상 정보**

Q3.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최초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수정 등의 단계에서 수집·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접속 로그(log), 쿠키(cookie), 결제 기록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도 파기 등 조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분리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

※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3. 이용자 권리 보장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 ⑦ 영업양수자 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정보통신망법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법 규정 취지

- 정보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사항이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며, 더 이상 개인정보의 이용을 원하지 않으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가 이와 같은 이용자의 권리를 항상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와 사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열람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 단,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정정 및 동의 철회 등에 대한 권리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행사합니다.

(2) 사업자 조치 사항

-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①이용자의 열람·정정, 삭제 및 동의철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②이용자가 이러한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공개해야 하며 ③이용자의 열람·정정 및 동의 철회 요구에 대해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해설

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철회권

-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회원에서 탈퇴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회원탈퇴, 서비스 철회 등 동의 철회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의 철회 후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웹사이트는 통상적으로 '회원탈퇴' 메뉴를 조치하는 방식으로 동의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 메뉴 예시>

회원정보수정
회원전환
회원상태
경매별점차감
회원등급

○ 회원탈퇴신청

회원탈퇴란, 옥션사이트에 대한 이용해지를 의미합니다. 옥션에서 발송하는 광고성 이메일의 경우 회원탈퇴 요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발송이 중지됩니다. 다만, 드물게 데이터 처리사정상 일부 지연될 수 있으니, 회원탈퇴 요청 후 48시간이 지난 후에 광고성 이메일/SMS를 접수하시는 경우 당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탈퇴시 유의사항

- 회원탈퇴를 위해선 아래 2가지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판매 또는 구매가 진행중인 상품이 없어야 합니다.
 - 마이네스 이머니 또는 출금 가능한 이머니, 판매예치금이 없어야 합니다.
- 회원탈퇴 시 보유하고 계신 쿠폰과 포인트는 즉시 소멸되며, 동일한 아이디로 재가입 하더라도 복원되지 않습니다.

탈퇴회원 회원정보 보존기간

- 회원탈퇴가 완료되더라도 판/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원정보가 일정기간 보존됨을 알려드립니다.
-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보관여부는 거래내역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래내역 없음 : 임의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 계약 종료 후 6개월간 보관후 삭제
 - 거래내역 있음 : 상법에 따라 경매 낙찰내역 보존 필요에 따라 아이디와 함께 기본정보는 5~10년간 보관

○ 탈퇴회원 재가입 기준

옥션 탈퇴회원의 재가입은 동일 **아이디로 재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거래내역이 없는 회원은 새로운 아이디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여기서 거래내역이라 함은 판/구매활동 이외에 **입찰, 이머니 충전/출금, 포인트 획득, 쿠폰 다운로드** 등 옥션 ID를 사용한 모든 활동내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탈퇴회원에게는 재가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탈퇴후 7일 이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재가입 회원의 경우 신규회원 대상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구분	재가입기준		비고	재가입유예기간
	새로운 ID	동일 ID		
거래내역이 없는 회원	●	✘	예전 사용했던 아이디로 재가입 불가능, 새로운 아이디로만 가입 가능	회원탈퇴 후 7일 경과 후 재가입 가능
거래내역이 있는 회원	✘	●	동일한 아이디로 재가입 할 경우 예전 아이디실적이 그대로 반영됨	
영구정지 회원	✘	✘	영구정지회원은 재가입 자체가 불가능함	

회원탈퇴 신청 >

※ 본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 표준양식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열람·제공 및 정정 요구권

-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상태이며 오류는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공된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시 말해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오류가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특히, 이용자는 개인정보 자체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이용내역,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등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30조제2항의 열람 및 제공,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한 현황

다. 법정대리인의 권리 보장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정보주체가 아닌 법정대리인이 대신 행사합니다.

- 따라서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혹은 동의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주고,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정보 주체가 요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라. 가입 절차보다 쉬운 탈퇴 절차 마련

○ 이용자가 회원탈퇴나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등 동의 철회를 하는 방법은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 더 쉬운 방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접근매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철회방법이 수집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이에 더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 더 쉬운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조치로는 접근매체의 확대(전화, ARS, 이메일 등을 통한 철회도 가능하도록 조치), 철회 메뉴의 다양화(철회메뉴를 메인화면 외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나의 개인정보, 해당 서비스의 게시판 등에서 언제든지 쉽게 발견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회원가입 절차는 쉽게 하면서도 탈퇴 절차는 까다롭게 만들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동의철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정정하는 절차도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쉬워야 합니다.

○ 또한 동의철회나 열람·정정 방법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안내하여야 합니다.

마. 이용자 권리 행사에 대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철회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열람이나 정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는 합리적 이유와 근거가 없는 한 곧바로 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이후 개인정보 이용 내역 전체를 요구한다면,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추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열람·정정 요구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열람 및 정정 요구의 거부

-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았는데도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오류에 대한 정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지 못하는 경우의 예

1.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재산, 신체 또는 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4) 벌칙 및 행정처벌

-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였으나, 사업자가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76조제1항제4호)
- 이용자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76조제1항제5호)

- 오류 정정을 요구받았으나,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76조제1항제5호)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정보 주체의 열람 및 정정·삭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에 개별 규정이 있어 이를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의 열람 및 정정·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조치하면 됩니다.
- 다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근거 법령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 근거 법령 >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행정안전부, 2011.12월 발간)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
3.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 법 규정 취지

- 이용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2) 사업자 조치 사항

-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②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를 취급위탁 받은 자 및 그 취급위탁 목적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해설

가. 법 적용 대상

-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수를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일일 보유량의 평균으로 산정함
 - ※ 전년도 10, 11, 12월 일일 보유량(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수)의 총합/92(일수)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또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여 발생하는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 통지 대상 정보

- 사업자는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②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한 경우 취급위탁을 받은 자와 취급위탁 목적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만을 통지하면 되므로 개별적인 건별 이용내역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통지 대상 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과 해당 목적 내에서 실제로 제공·위탁한 내역(제3자 제공 : 제공받은 자, 목적, 항목, 취급 위탁 : 위탁받은 자, 목적)을 통지하면 됩니다.

- 다만, 제공·위탁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과 함께 제공·위탁한 내역이 없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 통지에 의해 수사중인 상황이 노출될 경우 수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통지 대상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적시된 법률에 의한 경우와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은 이용내역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용내역 통지 제외 대상 정보 관련 조항 >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 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5.5.26>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⑨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 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③ 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통지 주기 및 방법

-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편의에 따라 통지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통지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한 연락처 정보에 따라서 통지의 방법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와 유사한 방법에는 SMS나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포함되며, 통지 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 주소만 보내고 이용자가 해당 웹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개별적인 통지 없이 웹사이트 게재를 통해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이용내역 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예시 >

▶ (수집·이용 목적)

⇒ (취급방침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기재)

▶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 (취급방침에 따른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기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 : (개인정보 제공 받은 자 기재. 다수일 경우 00등 00사)

⇒ 제공 목적 : (제3자 제공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은 목적 중 해당사항 기재)

⇒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기재)

▶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 개인정보의 수탁자 : (개인정보를 취급위탁 받은자 기재. 다수일 경우 00등 00사)

⇒ 취급위탁 목적 :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 내용 기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표준양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벌칙 및 행정처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76조제1항제5의2호)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Q&A**수사기관 제공 내역**

Q1.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한 내역도 통지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 통지에 의해 수사중인 상황이 노출될 경우 수사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13조의4(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통신비밀의 보호)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이용내역 통지 대상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적시된 법률에 의한 경우와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은 이용내역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A**이용자 선택**

Q2.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해당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반드시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Q&A**통지 방법**

Q3. 이용내역은 어떻게 통지해야 하나요?

A.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연 1회 이상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대상 정보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용·제공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용·제공 내역이 많은 경우 '000외 00곳'과 같은 형식으로 통지하고 자세한 내용은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제공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을 포함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취급방침 작성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되, 그 명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법 제27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②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변경 이유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 근거 법령 >

- 2.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 3.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는 방법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주요 사항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1) 법 규정 취지

-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보유·관리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수집 및 이용 목적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를 최초로 수집하는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그런데 최초 수집 단계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이용자가 숙지해야 할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얻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 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방법, 위탁 사항 등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관해 이용자가 언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 조치 사항

- ①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2항에 규정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 수립
- ②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3) 해설

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포함 내용

- 이용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반영하여 공개해야 하는데,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다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법령에 따라 명칭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조항이 제정되기 전에는 사업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 취급정책’, ‘개인정보보호방침’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이 조항을 통해 명칭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으로 통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사무실의 보기 쉬운 장소,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하거나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방법의 예

1.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주소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홈페이지 첫 화면 최하단 중앙에 게시한 후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2. 점포·사무소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공고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3. 이용자에게 월 단위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 또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할 때에는 글자크기, 색상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사용예시 >



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개인정보 취급방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 변경 공지 방법

1. 홈페이지 첫 화면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해 공지
2. 서면, 팩스, 이메일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3. 점포·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4) 벌칙 및 행정처벌

-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76조제2항제4호)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도 별도 규정이 있어 이를 우선 적용하게 되므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면 됩니다.

< 관계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6. 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이하 “누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누출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 및 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이하 “누출등”이라 한다)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1) 법 규정 취지

- 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제도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이하 '누출등') 발생 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스팸, 전화사기 등 개인정보 누출등으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사업자 조치 사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①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②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③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대응 조치, ⑤이용자가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게시가 곤란한 경우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해설

가. 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누출등)'의 의미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을 통칭하여 '누출등'으로 표현하며, '누출등'의 범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통제를 상실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제와 유사한 제도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제가 있습니다.
- 두 제도는 각각 개인정보 '누출등'과 '유출'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적용 범위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의 '유출'과 정보통신망법의 '누출'의 사전적 의미는 물품·정보·비밀 등이 불법적으로 국가나 조직의 밖으로 새어나가 버린다는 뜻으로 같음

< 관계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참고]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유출’ 정의 관련 조항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한 경우

나. 통지 및 신고 시기 및 내용

○ 개인정보 누출등의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 및 신고

- 개인정보 누출등의 사실을 안 때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누출등의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통지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 또한, '지체 없이' 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규정된 정의는 없으나, 관련 관례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및 근거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제는 개인정보 누출등으로 인한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함이 목적이므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항목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항목은 동일합니다.

[통지 및 신고 항목]

- ①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②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 ③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 ⑤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추가 확인 사항에 대한 '즉시' 통지 및 신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누출등의 발생시점에 확인 가능한 사항을 먼저 통지·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은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즉시'의 의미는 '추가로 확인되자마자 바로' 통지·신고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누출등이 발생시점에 대해 확인 가능한 사항을 먼저 통지·신고할 경우에는, 먼저 확인된 사항을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 상담 접수부서 및 연락처와 함께 통지·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는,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의 경우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가 가중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먼저 파악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하고 이용자에 통지하도록 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 통지 및 신고 방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 제27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 제도의 통지방법은 사업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 통지방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타 규정의 통지방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지침 제28조(개인정보 유출통지방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0조(취급위탁 통지), 제11조(영업양도·양수 통지)를 준용함

- 누출등의 사고 발생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와 신고의 방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i-privacy.kr**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누출등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누출등 신고의 신속한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인터넷(**i-privacy.kr**)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며,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신고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사업자 개인정보 누출신고서(양식)

(필수)가 표시되어있는 항목을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경우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기관명(필수)		사업자번호(필수)	
누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누출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필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필수)			
이용자가 상담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필수)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 하단은 접수기관에서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신고자는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접수 기관	기관명(지역)	접수자명	연락처	이메일	접수일자

라.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 통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하여야 하는 항목(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할 수 있습니다.

(4) 벌칙 및 행정처벌

- 이용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76조제1항제2의2호)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정보통신망법상 누출등의 통지·신고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 통지·신고는 신고 기준(범위) 제한 유무, 신고 접수기관, 신고의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시에 한하여 5일 이내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고범위에 제한이 없고, 신고기간도 누출등의 사실 인지시 지체 없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정보통신망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1건의 개인정보라도 누출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칠 수 있는 파급력과 전파력이 오프라인과 비견할 수 없이 크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속하게 신고토록 하여 2차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제도와와의 보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아래의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제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비교 >

구 분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통지 · 신고 대상	<p>개인정보 유출</p> <p>※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26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 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p>개인정보 도난, 분실, 누출(‘누출등’)</p> <p>※ 별도의 정의 없음</p>	
과태료	3천만원	3천만원	
통 지	시점	<p>유출 사실 인지 시 <u>지체 없이 통지</u></p> <p>※ 지침 제27조제1항: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p>	<p>누출등 사실 인지 시 <u>지체 없이 통지</u></p> <p>※ “지체 없이”에 대한 규정 없음</p> <p>※ 판례 : 합리적인 이유 및 근거가 없는 한 즉시</p>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방법	<p>서면 등의 방법</p> <p>※ 지침 제28조제1항 :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p>	<p>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등</p>

구 분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1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 - (홈페이지 운영) 서면+인터넷 홈페이지 7일 이상 통지내용 게재 - (홈페이지 미운영) 서면+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신 고	범위 1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 지체없이 신고 시점 ※ 지침 제29조제1항: 5일 이내	누출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누출등 사실 인지 시 지체 없이 신고
	접수 기관 행정안전부 및 전문기관 ※ 전문기관(시행령 제39조제2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내용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 ※ 지침 신고서식 : 기관명 , 정보주체 에의 통지 여부, 유출신고접수기관 + 통지 내용	1.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통지 내용과 신고내용이 동일
	방법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별지 1호 서식) ※ 지침 제29조제3항: 전자우편, 팩스,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출사고 신고 및 신고서 제출 -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전화 신고 후 유출 신고서 제출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등 ※ 통지 방법과 신고방법이 동일
	전문 기관 역할	피해 확산방지, 피해복구 등을 위한 기술지원

Q&A

신고 기관

Q1. 온·오프라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어느 기관에 누출등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정보통신망법상 누출등의 신고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 신고는 범위, 시점, 접수 기관, 내용 및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오프라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누출등의 통지·신고제도 비교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지·신고 대상		개인정보 도난, 분실, 누출('누출등')	개인정보 유출
신고	범위·시점	규모에 상관없이 인지시 지체없이	1만명 이상 유출시 지체 없이 (5일 이내)
	접수기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전문기관(KISA, NIA)
	내용	※ 통지내용과 동일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
	방법	※ 통지방법과 동일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

Q&A

신고 방법

Q2. 개인정보에 누출등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i-privacy.kr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누출등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누출등 신고의 신속한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인터넷 (i-privacy.kr)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며,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신고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A

추가 통지·신고

Q3. 개인정보에 누출등이 발생한 사실은 인지하였으나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누출등의 발생시점에 대해 확인 가능한 사항을 먼저 통지·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은 즉시 통지·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출등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확인된 사항을 먼저 통지·신고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통지·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누출등의 된 개인정보 항목, 누출등의 발생시점에 대해 확인 가능한 사항을 먼저 통지·신고할 경우에는, 먼저 확인된 사항을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 상담 접수부서 및 연락처와 함께 통지·신고 하여야 합니다.

7. 영업 양수·양도 시 조치 사항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라 그 이전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1조(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 규정 취지

- 상거래와 같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업자 간의 영업 양도·양수 및 합병은 기업 활동이 있는 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원활한 영업 활동을 위해 고객정보 또한 양도와 양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동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영업 양도는 타인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전하게 되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유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그러나 영업양도 및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 일일이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뿐더러 기업 간 양도·양수 거래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통지 의무만으로 개인정보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가 이전·승계 될 때에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2) 사업자 조치 사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전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영업양도자가 개인정보 수집시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은 목적과는 다르게 영업양수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해설

가. 통지 주체

- 영업의 양도·양수나 합병이 발생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이때 이용자에게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무는 우선적으로 양도자(개인정보를 넘겨주는 사업자)에게 발생합니다.
- 그러나 양도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통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사실은 정보 주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통지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정보 주체는 이전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양수자(개인정보를 넘겨받는 사업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양도자가 이전 사실을 통지했다면 양수자에게는 통지의무가 없지만, 양도자가 통지하지 못했다면 양수자에게 통지의무가 발생합니다.

나. 통지 내용

- 영업 양도·양수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②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영업 양수자 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③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 통지 방법

-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통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는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등으로 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이용자의 개별 연락처를 활용해 해당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개별 통지가 불가능하면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통지해야 할 대상자 중에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대상자가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개별 통지 외에 홈페이지 게시 혹은 신문 공고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별 통지를 하더라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지 및 게시 시점은 계약 시점과는 무관하게 개인정보 DB가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즉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 이전 시점은 계약 시점과는 무관하나, 통상적으로 계약 시점에서 개인정보의 이전이 발생하므로 계약 시점을 개인정보 이전 행위의 기준으로 생각하되,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저장 매체 및 문서 등의 양도 시점이 계약 시점과 달라, 계약 시점과 개인정보 이전 시점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영업 양도·양수 과정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개인정보 DB가 저장된 서버 등 저장 매체 및 문서의 소유주가 변경되므로, 계약 시점과 개인정보 이전 시점이 동일한 경우가 빈번할 수 있습니다.

○ 통지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OO는 2012년 1월 1일자로 □□□홈페이지의 운영을 XXX사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원 여러분의 개인정보 또한 XXX사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 홈페이지 운영을 양도받은 XXX사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명 : XXX사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xxx-99번지
- 전화번호 : 02-123-4567
- 기타 연락처 : webmaster@xxxxxx.xx.xx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분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OOO팀 OOO
- 전화 : 02-400-7000
- 메일 : webmaster@OOO.OO.OO

라. 영업양수자들의 '별도의 동의' 획득 의무 규정

- 영업양수자들은 당초의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수자들이 당초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려면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는 영업양도 등의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되었다고 그 개인정보는 당해 영업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 사업자들이 영업양도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회원정보를 제3의 업체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자사의 다른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 기업 합병에 따라 두 회사에서 취급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결합하여 홍보할 경우에는 당초 이용자로부터 신상품 홍보에 대한 동의를 얻었을지라도 기업 합병으로 말미암아 성격이 전혀 다른 두 회사의 상품을 결합하여 신규 패키지 상품을 홍보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벌칙 및 행정처벌

- 영업양도자 또는 영업양수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6조제2항제2호)
- 영업양수자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1조제3호)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영업양도 등에 따른 규정이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에 개별 규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조치하면 됩니다.

< 관계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8.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
4.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5.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 근거 법령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 ⑤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여야 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규정 취지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운영상의 과실이나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주요 유·노출 사례

- 2012년 주요 사업자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E사 423만 건, K사 873만 건)
- 2011년 주요 사업자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S사 3,500만 건, N사 1,320만 건)
- 쇼핑몰 업체 DB관리자 계정 소홀 및 암호화 미적용
- 게임 사이트에서 대규모 명의도용 사태 발생(122만여 명 명의도용)

(2) 사업자 조치사항

-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세부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접근통제, 접속 기록의 위조·변조 방지,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컴퓨터 바이러스 침해 방지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내부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 분리 조치
 - **(사업자 기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개인정보취급자 기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은 망분리 적용 대상

- 업무망에서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물리적 또는 논리적 망 차단조치 적용
-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낮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도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망분리 조치 적용 권고

-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에 대한 확인·감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 개인정보취급자, 이용자의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 주민등록번호 및 금융정보(계좌정보 등)의 암호화 저장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고시와 해설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벌칙 및 행정처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6조제1항제3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1호)

-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법에 개별 규정이 있으므로 동법에 따라 조치하면 됩니다.

< 관계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세부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방통위 고시 제2012-50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1-43호)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사업 규모에 따른 예외 규정 없음	○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교육 횟수 명시 : 매년 2회 이상	○ 별도 교육 횟수를 명시하지 않음
접근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의 내역 기록 보관 의무 : 최소 5년간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의 내역 기록 보관 의무 : 최소 3년간 보관
	○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구체적으로 명시 - 10자리 이상 : 2종류 이상 조합 - 8자리 이상 : 3종류 이상 조합 ※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 문자 등 4종류	○ 비밀번호 설정 관련 세부 기준 명시하지 않음 ※ 해설서에 구체적 작성 규칙을 예시로 반영 · 10자리 이상 : 2종류 이상 조합 · 8자리 이상 : 3종류 이상 조합
	○ 사업자, 개인정보취급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PC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 의무화	○ 외부 인터넷망 차단 의무화 규정 없음
암호화	○ 암호화 대상 :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주민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 번호	○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송·수신시 암호화	○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송·수신시 암호화
접속 기록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 최소 6개월 이상 * 기간 통신사업자는 최소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 최소 6개월 이상

Q&A**망분리 대상**

Q1. 망분리 의무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우선 망분리 의무화 대상 사업자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입니다. 다음으로 망분리 의무화 대상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자입니다. 즉, 의무화 대상 사업자 중 해당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만이 망분리 의무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CS센터와 같이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하는 제한된 권한만을 가진 개인정보 취급자들은 망분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A**망분리 방법**

Q2. 망분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망분리 방식은 크게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망분리는 업무용 PC와 인터넷용 PC로 구분하여 2대의 PC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논리적 망분리는 서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PC는 사용 화면만을 출력하게 하는 서버기반 논리적 망분리와, PC 가상화를 통해 인터넷 영역과 업무 영역으로 분리하는 PC기반 논리적 망분리가 있습니다.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를 모두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영업상황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망분리 적용대상이 소규모(3인 이하)일 경우, 비용 측면에서 물리적 망분리가 유리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논리적 망분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A**망분리 기한**

Q3. 망분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사업자의 망분리 구축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시행령 부칙 제1조). 따라서 2013년 2월 18일까지 망분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제3호,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 제39조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7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보호조치) ①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법 규정 취지

- 경제·사회·문화에 걸친 국제 교류가 증가하고 다국적 기업의 국내 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 또한 빈번해졌습니다.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체계가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로 개인정보가 옮겨지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 조치 사항

-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에는 ①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②이전되는 국가·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③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④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해설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장소·위치 이동)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①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국내 영업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 ②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이전일시 및 이전방법(국외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국외 기업 또는 국외 서버로의 위치 이동)
 - ③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 연락처)
 - ④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앞서 설명한 동의 방법과 같습니다.
- 국외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우리나라와 법적 환경이 다른 나라에서도 최소한의 보호 수준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 국외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쪽과 개인정보의 보호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이전 계약서 작성 시에는 그 조치사항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4) 벌칙 및 행정처벌

- 과태료 및 과징금 관련 조항은 별도로 없으나, 64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적용 대상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 제3자 제공시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에 대해 모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이전의 목적을 불문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일률적인 동의 절차는 배제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국외 제공보다 넓은 개념으로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처리를 국외의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국외로 옮겨지는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각각의 규정에 따라 제공, 위탁, 양도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따른 경우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요

- 정보통신망법에는 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할지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라야 합니다.
- 이번 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만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CCTV 설치·운영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근거 법령 >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CCTV 설치·운영 제한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행정안전부, 2011.12월 발간)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을 참조하여 조치하면 됩니다.

3.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대부분을 해당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직접 수집할 수도 있지만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수집하거나, 신규 고객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에게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이외로부터 출처로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할지라도 이용자에게 직접 수집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의 고지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행정안전부, 2011.12월 발간)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고지 등을 참조하면 됩니다.

1. 과징금

(1) 과징금의 의미

-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적 개인정보 활용(목적외 이용, 동의 없는 취급위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태료 및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제재를 부과한 바 있으나,
 -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개인정보의 불법 활용 및 오·남용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권(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의 불법적인 취급을 방지하거나 후속적인 피해 예방이 주목적인 인격권 보호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는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의 부과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과 같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수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 규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2) 과징금 부과 규정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4.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경우
6.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크게 아래와 같은 7가지입니다.

- ①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② 이용자 동의 없는 민감정보 수집, ③ 이용자에게 동의 받은 목적 외의 개인정보 이용, ④ 이용자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한 경우, ⑥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⑦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영업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이용·제공하는 등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다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비록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영업이익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번 유출되면 회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어 과징금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또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매출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1억 이하로 상한선을 두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3) 과징금 부과 기준

- 정보통신망법은 과징금 부과를 위한 권한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인 과징금 산출 기준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에서는 그 세부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징금 부과 기준은 과징금 산출의 기본이 되는 ① ‘기본 과징금’을 기반으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②‘의무적 조정과징금’,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 정도, 위반행위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대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③‘임의적 조정과징금’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기본 과징금

- 기본 과징금은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산출됩니다.

①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 ② 부과 기준율

-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은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연평균 매출액을 의미하는데,
 -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합니다.
 - 매출액의 산정시 서비스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제공 방식
2. 서비스 가입 방법(서비스 가입시 온라인 가입인지 오프라인 가입인지 여부 및 하나의 사업자가 수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되어 각각 별개의 가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
3.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의 범위
4.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부과 기준율**이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말하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천분의 9,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천분의 7, 일반 위반행위의 경우는 1천분의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시행령 제69조의2제4항 <별표8>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①고의·중과실 여부, ②영리 목적의 유무, ③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④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⑤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 중에서 고의·중과실 여부는 영리 목적의 유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즉,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일반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합니다.

- 감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3.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 기본 과징금 산정에 있어,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 과징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①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②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본과징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 또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는 이 상기 원칙으로 산출된 금액과 행위의 중대성 등급별 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중대성	일반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비교 기준	9,000만원	7,000만원	5,000만원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의 50/100의 범위 내에서 가중 혹은 감경됩니다.

- 위반 행위의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빈번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 또한 매우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가중 되거나 감경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기간) 위반 기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차등 가중

구분	단기 위반행위	중기 위반행위	장기 위반행위
위반 기간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가중 기준	가중 없음	100분의 25 가산	100분의 50 가산

- 이 경우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봅니다.

- 또한,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이용자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위반 횟수) 위반 횟수에 따라 감경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중기 위반행위
최초행위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
2회 이상 위반 행위	최근 3년간 1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감경 없음

- 이 경우 과거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것은 제외합니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기준

○ 개인정보 보호 노력 정도, 위반행위 조사 협조 여부, 위반행위 주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의 50/100의 범위 내에서 가중 혹은 감경이 가능합니다.

- 이 기준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해당 사항	비율
가중 사유	①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및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이나 서류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이용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30이내
	②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100분의 20이내
	③ 상기 2개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이내
감경 사유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이내
	② 개인정보 위반에 관한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이내
	③ 상기 2개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이내

라. 세부 기준의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관련 매출액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등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고시)을 마련하였습니다.

2. 과태료(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과태료 부과에의 경우에도 해당 행위의 반복 횟수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제재를 할 수는 없으나, 해당 행위를 중지토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중지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벌칙 대상으로써 행위 중지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제22조), 2.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제23조), 3.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제31조), 4.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제24조), 5.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제24조의2), 6.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제25조), 7. 영업양수자등이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제26조③), 8. 개인정보 오류정정 요청에 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제30조⑤)
--

- 이외에,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벌칙	과태료 부과 기준		
		1회	2회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 업무(제23조의3①) ○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 미이행(제23조의4①) 	과태료 (1천만원 이하)	1,000	1,00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폐지 미통보·신고(제23조②,③) ○ 제공, 취급위탁 동의 획득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미동시에 따른 서비스 제공 거부(제24조의2③) 	과태료 (1천만원 이하)	300	60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취급위탁사실 미공개(제25조②) ○ 영업양도 등 미통지(제26조①)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27조) 	과태료 (2천만원 이하)	600	1,200	2,000

위반 행위	벌칙	과태료 부과 기준		
		1회	2회	3회
○ 개인정보취급방침 미공개(제27조의2)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미제공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제23조)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미조치(제23조의2) ○ 누출등의 통지·신고의무 미이행(제27조의3①) ○ 개인정보 미파기(제29조①) ○ 유효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등 조치 미이행(제29조②) ○ 이용자의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 미조치(제30조③,④) ○ 이용자의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를 개인정보 수집 방법 보다 어렵게 함(제30조⑥) ○ 이용내역 미통지(제30조의2①)	과태료 (3천만원 이하)	1,000	2,000	3,000

3. 정리

○ 위의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	벌칙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과징금
		1회	2회	3회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제22조①)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매출액의 1/100 이하
동의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제23조①)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제24조)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제24조의2②)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제25조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 개인정보의 수집(제31조①)					

위반행위	벌칙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과징금
		1회	2회	3회	
영업양수자가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제26조③)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
개인정보의 오류 정정 요청에 대한 필요조치 이행전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30조⑤)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
기술적·관리적 미조치로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 발생(제28조①)	형사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000	2,000	3,000	1억원 이하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미제공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제23조②)	-	1,000	2,000	3,000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주민등록번호 이 외의 회원가입 방법 미제공(제23조의2)	-	1,000	2,000	3,000	-
제공, 위탁 동의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분하여 받지 않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 거부(법 제24조의2③)	-	300	600	1,000	-
개인정보 취급위탁사실 미공개(제25조②)	-	600	1,200	2,000	-
영업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사실 미통지 (제26조①,②)	-	600	1,200	2,000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미지정(제27조①)	-	600	1,200	2,000	-
개인정보취급방침 미공개(제27조의2①)	-	600	1,200	2,000	-
누출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제27조의3①)	-	1,000	2,000	3,000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파기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음(제29조①)	-	1,000	2,000	3,000	-
이용자의 동의철회·열람·정정 요구 미조치와 해당 요구를 개인정보 수집보다 어렵게 함 (제30조③④⑥)	-	1,000	2,000	3,000	-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제30조의2①)	-	1,000	2,000	3,000	-

VI. 정보통신망법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p>	<p>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p>
<p>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p>	
<p>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법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p> </div>
<p>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법 제23조제1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제23조제2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p> </div>
<p>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법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수 없다.</p> <p>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p> <p>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p> <p>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p> <p>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p>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3천만원 이하 과태료)</p> </div>
<p>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p> <p>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p> <p>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p> <p>②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지정절차 및 휴지·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p> <p>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p> <p>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라.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p> <p>마.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p> <p>바.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사.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p> <p>아. 접속정보의 위조·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p> <p>자.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2. 기술적 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8명 이상 보유할 것</p> <p>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p> <p>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p> <p>3. 재정적 능력: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일 것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p> <p>4. 설비규모의 적정성: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본인확인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규모 이상 보유할 것</p> <p>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설비</p> <p>나. 대체수단을 생성·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p> <p>다.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설비</p> <p>라.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p> <p>마. 화재·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설비</p> <p>②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조직·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p> <p>2.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4.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p> <p>②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본인확인기관의 명칭·소재지 및 지정일 등 지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 지정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9조의5(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 ① 본인확인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2.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3.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p>②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본인확인업무 휴지·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 서류 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p>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법 제24조(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p>
<p>제24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p>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p> <p>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p>	<p>※ 법 제25조제1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p> <p>-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 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p> <p>⑤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p>	<p>제10조(개인정보취급위탁의 통지)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p> <p>※ 법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p> <p>- 2천만원 이하 과태료</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p>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라 그 이전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2천만원 이하 과태료</p> </div>
<p>③ 영업양수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제26조제3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p> </div>
<p>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동의획득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p> <p>3. 동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p> <p>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p>
<p>제2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p>	
<p>제2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제27조제1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2천만원 이하 과태료</p> </div> <p>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된다.</p> <p>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p> <p>1. 임원</p> <p>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p> <p>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란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으로서 전년도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p>
<p>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4조(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p> <p>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 제27조의2제1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2천만원 이하 과태료</p> <p>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을 공개하되, 그 명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p>②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변경 이유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2.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3.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는 방법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주요 사항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p>
<p>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이하 “누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14조의2(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이하 “누출등”이라 한다)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1.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누출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3천만원 이하 과태료)</p> </div>
<p>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p>	<p>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한 보호조치</p> <p>※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p> <p>-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p> <p>※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제67조라 준용 경우 포함)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 3천만원 이하 과태료</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p>	<p>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 망 차단 4.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의 기준 설정과 운영 5.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p>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p>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서버 구축 등의 조치</p> <p>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p> <p>⑤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여야 한다.</p> <p>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p>	<p>※ 법 제28조의2제1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p> <p>-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p> <p>※ 법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p> <p>-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p>
<p>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p>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 달리 정한 기간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법 제29조제1항 본문(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p> </div>
<p>제3절 이용자의 권리</p>	
<p>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p> <p>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법 제30조제3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p> </div>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법 제30조제4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p> </div>
<p>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법 제30조제5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p>	
<p>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p>	<p>※ 법 제30조제6항(제67조에 따라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p>
<p>⑦ 영업양수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p>	<p>※ 영업양수자등이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p> <p>※ 영업양수자등이 동의철회, 열람요구 등 법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p>
<p>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p> <p>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p>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p> <p>※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 style="text-align: center;">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천만원 이하 과태료</p>
<p>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	<p>※ 법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p>
<p>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법정대리인의 동의철회, 열람 요구 등 법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p>
<p>제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제63조(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p>	<p>제67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보호조치) ①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3.28> 1.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p>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p>	<p>제68조(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삭제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 사유, 법적 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p> <p>⑦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p> <p>⑧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⑨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⑩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p>	<p>제69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p> <p>3. 제24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p> <p>4.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p> <p>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경우</p> <p>6.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p> <p>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p>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p>	<p>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p> <p>② 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법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제69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64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①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로, “이용자”는 “시청자”로 본다.</p> <p>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의2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p>	
<p>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p> <p>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p> <p>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p> <p>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p> <p>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p>	
<p>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p> <p>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p> <p>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p> <p>가. 재화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p> <p>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p> <p>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p> <p>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p> <p>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p> <p>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p> <p>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p> <p>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6.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p> <p>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23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p> <p>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2의2.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5.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5의2.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제67조</p>	<p>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제44조의5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2.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p> <p>2의5. 제24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p> <p>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p> <p>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p> <p>5.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p> <p>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p> <p>7. 제47조제7항 및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p> <p>8. 삭제</p> <p>9. 삭제</p> <p>10. 제4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p> <p>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11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p> <p>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p> <p>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p> <p>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p> <p>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 벌칙 및 행정처벌</p>
<p>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p> <p>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p> <p>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21.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p> <p>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⑥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별표 8]

과징금의 산정기준(시행령 제69조의2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것

나.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할 것

2. 기본과징금

근거 법조문	기본 과징금
법 제6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p>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9,000만원 중 낮은 금액</p> <p>나. 중대한 위반행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7,000만원 중 낮은 금액</p> <p>다. 일반 위반행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5,000만원 중 낮은 금액</p>

비고

1.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2. “부과기준율”이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말하며, 1천분의 9(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7(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5(일반 위반행위)로 한다.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본과징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3. 의무적 조정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여야 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5. 세부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7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유형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호	300	600	1,000
나.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호	300	600	1,000
다. 법 제23조제2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호	1,000	2,000	3,000
라.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6조제1항제2호	1,000	2,000	3,000
마. 법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호의2	1,000	1,000	1,000
바.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를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	법 제76조제3항제2호의3	300	6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p>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p> <p>사.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경우</p> <p>아. 법 제24조의2제3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않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p> <p>자. 법 제25조제2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p> <p>차.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p> <p>카. 법 제27조제1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p> <p>타. 법 제27조의2제1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p> <p>파.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67조에 따라</p>	<p>법 제76조제3항제2호의4</p> <p>법 제76조제3항제2호의5</p> <p>법 제76조제2항제1호</p> <p>법 제76조제2항제2호</p> <p>법 제76조제2항제3호</p> <p>법 제76조제2항제4호</p> <p>법 제76조제1항제2호의2</p>	<p>1,000</p> <p>300</p> <p>600</p> <p>600</p> <p>600</p> <p>600</p> <p>1,000</p>	<p>1,000</p> <p>600</p> <p>1,200</p> <p>1,200</p> <p>1,200</p> <p>1,200</p> <p>2,000</p>	<p>1,000</p> <p>1,000</p> <p>1,000</p> <p>2,000</p> <p>2,000</p> <p>2,000</p> <p>3,000</p>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하. 법 제28조제1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거.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과기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6조제1항제4호	1,000	2,000	3,000
너. 법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법 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5호	1,000	2,000	3,000
더.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2	1,000	2,000	3,000
러. 법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3호	300	600	1,000
머.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4호	300	600	1,000
며. 법 제44조의5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6호	1,000	2,000	3,000
서.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5호	1,000	1,000	1,000
어.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6호	1,000	1,0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저. 법 제47조제7항 및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7호	300	600	1,000
처. 법 제4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0호	300	600	1,000
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1호	300	600	1,000
티.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1호의2	300	600	1,000
피.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2호	300	600	1,000
허.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7호	750	1,500	3,000
고. 법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힌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8호	750	1,500	3,000
노. 법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9호	750	1,500	3,000
도. 법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0호	750	1,500	3,000
로. 법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1호	750	1,500	3,000
모. 법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3호	300	600	1,000
보. 법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법 제76조제3항제14호	300	6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휴지·폐지·해산의 신고를 않은 경우				
소.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5호	300	600	1,000
오.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6호	300	600	1,000
조.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 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7호	300	600	1,000
초.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 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8호	300	600	1,000
코. 법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 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9호	300	600	1,000
토. 법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 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0호	300	600	1,000
포.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 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1호	300	600	1,000
호.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2호	300	600	1,000
구.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3호	300	600	1,000
누.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	법 제76조제3항제24호	300	6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2호			
두. 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71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	3,000	3,000
2) 법 제72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0	2,000	2,000
3) 법 제73조 및 제74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4) 법 제7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5) 법 제76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50	750	750
6) 법 제76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00	600	600	

비고: 허목부터 로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9조의2제4항 및 [별표 8]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제3조(기본과징금) ① 기본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영 [별표 8] 제2호 비고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②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기본 과징금을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산정금액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낮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산정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적용한다.

관련 법조문	기본 과징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9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7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5천만원

③ 영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본과징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제4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관련 매출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방식
2. 서비스 가입 방법(서비스 가입시 온라인 가입인지 오프라인 가입인지 여부 및 하나의 사업자가 수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되

어 각각 별개의 가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

3.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4.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 ③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5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8] 제2호 비고 3.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중과실 여부는 영리 목적의 유무,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일반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③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1.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3.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제6조(의무적 조정과징금) ① 위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기본과징금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②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최초 위반행위: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2회 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1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을 유지한다.

③ 제2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제7조(위반기간의 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이용자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임의적 조정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임의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9조(시정조치의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된 날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임의적 가중·감경 금액(제8조 관련)

I. 가중사유 및 비율

1. 위반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이나 서류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이용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II. 감경 사유 및 비율

1.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 이내
2.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 2008. 05. 1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03호
 전부개정 2009. 08. 07.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1호
 개정 2011. 01. 0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01호
 개정 2012. 08. 2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50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내부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5. “망분리”라 함은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내부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 차단조치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7. “접속기록”이라 함은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8. “바이오정보”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9. “P2P(Peer to Peer)”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유설정”이라 함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변경·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보안서버”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송·수신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웹서버를 말한다.
12. “인증정보”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요구한 식별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 계획,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통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 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 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문자 종류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가. 영문 대문자(26개)

나. 영문 소문자(26개)

다. 숫자(10개)

라. 특수문자(32개)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존·관리해야할 최소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용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제7조(악성프로그램 방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백신 소프트웨어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소프트웨어 또는 운영체제 제작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응용프로그램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출력·복사시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력·복사 기록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조회, 출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표시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성명 중 이름의 첫 번째 글자 이상
2. 생년월일
3.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전화번호의 국번
4. 주소의 읍·면·동
5. 인터넷주소는 버전 4의 경우 17~24비트 영역, 버전 6의 경우 113~128비트 영역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21호, 2009.8.7.>

이 고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1호, 2011.1.5.>

이 고시는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50호, 2012.8.23.>

이 고시는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 2012. 08. 08.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4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정신청기관”이라 함은 본인확인기관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식별정보(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등) 및 비밀정보(비밀번호 등)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본인확인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본인확인정보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

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로서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 식별번호 및 본인확인기관간 공유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

6. “웹사이트 식별정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다른 웹사이트와 구별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이 부여한 정보를 말한다.
7. “공유비밀정보”라 함은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이용자에 대해 동일한 중복가입확인정보와 연계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공유하는 정보를 말한다.
8. “연계정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기관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
9.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본인확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인증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장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제1절 지정신청 절차

제3조(지정신청방법) ①지정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영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③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 : 1부
 2. 사업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 및 CD 1벌

제4조(지정심사계획의 수립)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정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정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
 2.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정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서류의 보정 등) ①지정신청기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정신청기관에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기준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2절 지정심사 기준 및 방법

제6조(심사기준) ①지정심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정보통신설비 관련 시설 및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영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심사일) 지정심사는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정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심사방법) ①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심사 결과 영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지정신청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결과 모든 심사사항이 제6조제2항의 평가기준에 적합한 지정신청기관을 지정대상기관으로 선정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신청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심사항목별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절 지정대상기관 선정 및 지정서 교부

제10조(심사결과 통보) ①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지정신청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서 교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신청기관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교부한다.

제12조(사후관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업무의 적정한 추진과 영 제9조의3의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의제)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

제14조(이용자에 대한 통보방법) ①영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확인기관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신고) ①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확인업무(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휴지·폐지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